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893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유선문(공판)
판 결 선 고	2026. 3.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영상저작물인 'D',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영상저작물인 'F', 'G'에 대한 각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제작사들이다(이하 '피해회사들'이라 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6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5. 7. 26. 18: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H에서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였고, 2025. 8. 21. 02:59경 및 같은 날 04:07경 위 장소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F',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복제하였으며, 위 각 행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상저작물에 대한 피해회사들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회사들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16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4. 12.경 B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배포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기존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_____